



제 433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에 무과실책임 부여〉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38호)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47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개정안들의 발의 배경 및 필요성	4
2.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무과실책임 도입(강준 현의원안·조인철의원안)	11
(1) 피해분담 책임주체·대상	11
(2) 피해 보상한도 및 분담	17
(3) 피해보상의 면책	19
(4) 배상책임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	23
(5) 초과보상시 반환 절차	25
(6) 금융감독원의 보상 지원절차	29
(7) 허위 보상신청시 벌칙 근거 마련	34
3. 금융회사의 피해방지체계 강화(조인철의원안)	35
(1)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 운영 의무화 등	35
(2) 금융회사 관리·감독 강화	37

4. 금융회사의 임시조치 등 권한 강화(조인철의원안)	40
(1) 임시조치 대상 확대 및 의심계좌확인조치 제도 신설	40
(2) 계좌 해지 또는 한도제한 요건 확대	44
(3) 임시조치 등 권한확대에 따른 손해배상 면책	47
5. 기타 자구 정비(조인철의원안)	48
[참고1] 보이스피싱 내부통제평가 관련	52

I. 제안경위

1. 강준현의원안

가.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2. 23.

다. 회 부 일 : 2025. 12. 24.

2. 조인철의원안

가.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12. 23.

다. 회 부 일 : 2025.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강준현의원안

보이스피싱 수법이 IT기술을 바탕으로 점차 복잡·교묘해지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상황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권 등의 배상책임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분담 중이나 현행 금융회사의 피해

금 환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은 피해자 구제의 실효적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인들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프라 운영기관인 금융회사들과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5천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금을 보상하되,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상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의 지원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보상대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한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피해의 보상의 대상 여부의 확인, 보상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의 허위 보상신청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고자 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6조제5호 신설).

2. 조인철의원안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활동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금년 중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수단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금을 보상하되,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사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탐지시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 외에도 사기 관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확인조치를 불응하거나 임시 조치 해제 후에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기관련의심계좌를 해지하거나 한도를 제한하여,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4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들의 발의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거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 자체점검 결과 사기이용계좌¹⁾로 추정되는 경우 등에 금융회사가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권소멸절차를 공고·개시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그런데 피해자금이 해외계좌 등으로 이전되거나 현금 인출 또는 다단계 이체되어 자금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 경우와 같이 국내 금융회사 계좌를 이용한 자금 동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현행 법상의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1)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 참고로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은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²⁾에 따라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으나³⁾, 2025년 4월 기준 은행권에서는 피해배상 신청에 대하여 전체 피해금액의 약 18% 수준을 배상⁴⁾하는 데 그치는 등 구속력이 없는 협약 특성상 배상수준이 제한적이고,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되어 실질적인 구제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함.

○ 이에 개정안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무과실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 보임.

□ 참고로, 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⁵⁾의 특례로서 무과

2)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 체결한 자율협약.

○(신청대상)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①개인정보가 유출되어 ②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또는 카드 사용 등 ③금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자율배상 신청 가능 / 다만, 제3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이체한 경우,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중고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됨.

○(배상금액)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3) 은행은 2024. 1. 1. 이후,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은 2025. 1. 1. 이후 발생한 금전 피해에 대해 적용

* 증권사, 저축은행, 농·수·축협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생·손보), 카드사, 캐피탈사, 우체국)

4) 은행권의 경우 2024. 1.~2025. 4. 기간 중 2,24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 6,891만원을 배상(피해금액의 약 18% 수준)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하여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2025. 5. 29.)

실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 주요 입법례로는 「제조물 책임법」⁶⁾,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⁷⁾, 「원자력 손해배상법」⁸⁾, 「광업법」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¹⁰⁾ 등이 있는데, 이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각종 위험원이 발달하고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헌법이념의 하나인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기존 과실책임의 원리를 수정하여 위험원을 지배하는 자로 하여금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의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위험책임의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¹¹⁾.

○ 또한 주요 금융관계법령의 예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

-
- 5)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6)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9) 「광업법」 제75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坑水)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鑛煙)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해당 광업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광구의 광업권자(그 광구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조광구에서는 해당 조광권자)
 2.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소멸 당시 그 광구의 광업권자(광업권이 소멸할 때 해당 광업권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그 조광구에서는 해당 조광권자)
-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11) 헌법재판소 1998. 5. 28 자 96헌가4 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단서제2호위헌제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단서제2호위헌소원] 참고

용거래법」 등이 있는데¹²⁾¹³⁾, 이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에게 사고 발생에 따른 무과실책임을 부과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한 경우 등에 금융회사의 면책을 규정함.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偽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은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 해외의 주요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¹⁴⁾¹⁵⁾.

- 영국은 2024년 10월부터 은행 등 결제·지급기관이 소비자에게 85,000파운드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을 5영업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세계 최초의 강제배상 규칙을 도입하였으며, 배상비용은 결제금액 송금회사와 수취회사가 50:50으로 분담함.
- 싱가포르의 피싱 사기거래에 대하여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통신사까지 공동으로 피해액에 대한 보상 등 책임을 부담하며, 보이스피싱 발생에 책임이 있는 통신사는 최대 45영업일 내 피해액을 일부 보상하여야 함.

□ 한편,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분담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¹⁶⁾, 금융회사의 손해보전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보안 경계심이 낮아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범죄자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허위로 피해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챙기는 공모범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금융회사의 금융보안 체계 강화에 따라 일반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 역시 제기되고 있음¹⁷⁾.

14) 국제금융센터 Brief, “최근 주요국 금융사기 거래 제한 강화 움직임”, 2024. 10. 18.

15) 매일경제, “금융·통신사 책임 묻는 英·싱가포르 75세 이상 ATM출금액 제한하는 日”(2025. 7. 21.) (<https://www.mk.co.kr/news/society/11373720>)

16) 한경,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꺼내든 당정…금융권 “은행이 범죄 피해 책임지라니””(2025. 12. 31.)(<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3034041>)

17) 한경 오피니언, “[천자칼럼]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2025. 12. 3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3033371>)

○ 참고로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은 △소비자의 경각심, △통신사의 스팸·스팸·악성앱 차단, △금융회사의 이상 금융거래 탐지, △수사기관의 범죄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 등 여러 책임 주체의 노력이 합쳐져야만 예방·회복이 가능한 범죄이고, 금융회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통신사·정부 등 보이스피싱 대응 유관기관의 책임 분담이 필수적이므로, 금융·통신·공공이 보상책임을 공동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보상책임 부과 여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피해자 구제 강화의 필요성, 금융회사의 보안 투자 강화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의 예외 허용 여부, 금융회사 피해 보상의 세부적인 요건 및 면책사유, 국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피해방지체계 강화를 위한 보완조치에 대한 검토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골자로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20호)이 2026년 8월 4일 시행 예정¹⁸⁾이고, 법 적용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추가하는 내

18) 2026. 2. 3. 공포

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개정안들 심사 시 이를 고려한 내용 및 자구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무과실책임 도입 (강준현의원안 · 조인철의원안)

(1) 피해분담 책임주체 · 대상

□ 개정안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로 하여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고의 ·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강준현의원안 · 조인철의원안 제14조의3제1항 신설).

○ 구체적으로,

(보상 주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전체¹⁹⁾가 보상의 주체가 되고,

(보상 범위) 금융회사의 피해분담 금액 산정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

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5. 29., 2023. 5. 16.>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피해환급법”이라 함)」에 따라 피해환급금 등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보전된 일체의 금액은 제외하며,

(보상 대상) ① 피해자가 개인이고 ② 피해금의 이전방식이 금융회사를 통한 송금·이체(비대면) 방식이어야 하며 ③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전한 목적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 ‘투자 등을 통한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 수취(다만, 대출은 제외)’, ‘불법행위, 사행행위 또는 부당행위’가 아니어야 함.

현행	강준현의원안	조인철의원안
<신설>	제14조의3(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분담) ①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피해금을 말하며 피해환급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피해의 회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1. 피해자가 개인일 것 2. 피해금이 해당 피해발생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의 방법으로 이전되었을 것 3. 피해금을 이전한 원인, 목적	제14조의3(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분담) ①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피해환급금, 부당이득반환 등 일체의 피해의 회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1. 피해자가 법인이 아닐 것 2.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닐 것 3. 피해금을 이전한 원인,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u>적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할 것</u> <u>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u> <u>나. 투자, 출자, 금융상품의 매수·가입 등 명칭에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다만,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u> <u>다. 불법행위, 사행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u>	<u>모두 해당하지 아니할 것</u> <u>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u> <u>나. 투자, 출자, 금융상품의 매수·가입 등 피해자 또는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다만, 대출의 경우는 제외한다)</u> <u>다. 불법행위, 사행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u>
--	--	--

□ 현행법 체계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자금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지급정지 조치 이후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효성이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이에 개정안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강준현의원안과 조인철의원안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들에 따르면 피해보상주체는 전체 금융회사가 되는데, 2026년 3월 현재 본회의에 계류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법률안」²⁰⁾이 통과될 경우, 피해보상주체를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포함된 개념인 ‘금융회사등’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영세한 개별조합·금고 대신 중앙회 차원에서 피해보상을 대행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실효적인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강준현의원안·조인철의원안 제14조의3제1항제2호는 피해금이 피해발생계좌로부터 비대면방식²¹⁾으로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대면방식²²⁾으로 이전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현금으로 교부되는 특성상 계좌이체(비대면)와 달리 인출한 금액이 범죄자에게 언제 얼마나 교부되었는지, 교부된 현금이 어느 계좌로 얼마나 입금되었는지 등을 금

20) 법 적용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 추가

21) 계좌이체·송금

22) 출금·교부

용회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금융회사가 계좌이체를 통한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임.

[편취수법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계좌이체	대면편취	특정장소 지정	상품권 등 (소액결제)	배송형	기타
2021년	30,982	3,483 (11%)	22,752 (73%)	255	3,900	418	174
2022년	21,832	2,331 (11%)	14,053 (64%)	118	4,641	431	258
2023년	18,902	4,368 (23%)	7,234 (38%)	227	6,615	182	276
2024년	20,839	10,251 (49%)	6,793 (33%)	507	2,919	103	266
2025년 1~11월	21,588	11,856 (55%)	5,861 (27%)	1,226	1,605	32	1008

(자료: 금융위원회)

□ 다음으로, 강준현의원안·조인철의원안 제14조의3제1항제3호는 각 목에서 보상 제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 가목의 경우, 현행법 제2조제2호 단서가 이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자체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²³⁾, 해당 행위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한 취지로 보임.

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나목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금 이전 행위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 의사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보다 무게를 두어 금융회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보임²⁴⁾.

□ 마지막으로, 자구 관련 사항으로서 강준현의원안·조인철의원안 제14조의3제1항제3호는 “피해금을 이전한 원인,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전하게 된 원인 또는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24) 참고로 대법원 판례(2024. 10. 25. 선고, 2024도6831)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실 HT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투자금은 투자수수료 등과 달리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르면 투자사기 관련 사례에서, 피해자금을 이전한 목적이 ① 서비스이용료 지급 등 용역제공과 명확한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② 투자금 입금 등은 특정한 용역제공에 대한 명확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 개정안들은 ②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금융회사의 보상책임을 제외시키려는 것임.

(2) 피해 보상한도 및 분담

□ 금융회사의 피해보상 한도를 강준현의원안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조인철의원안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려는 것임(강준현의원안·조인철의원안 제14조의3제2항 신설).

- 또한 강준현의원안은 금융회사의 피해 보상을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와 해당 피해금을 송금·이체받은 사기이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양자가 각각 50:5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강준현의원안 제14조의3제5항 신설),
- 조인철의원안은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가 피해 보상을 전담하도록 함(조인철의원안 제14조의3제1항 신설).

현 행	강준현의원안	조인철의원안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최대 금액은 <u>5천만원 이하의 금액</u>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신청 및 산정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금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최대 금액은 <u>1천만원 이상의 금액</u>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신청 및 산정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금융회사는 피해 보상의 공동</u> <u>분담을 위하여 피해금을 피</u> <u>해발생계좌로부터 송금·이</u> <u>체받은 사기이용계좌를 개설</u> <u>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피해</u> <u>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2분의</u> <u>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u> <u>청구할 수 있다.</u>	
--	--	--

□ 강준현의원안은 피해발생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사기이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역시 보상책임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이용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 역시 범죄자에게 범죄용으로 이용될 계좌를 개설해주어 범죄를 발생·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고, 사기이용계좌 개설 금융회사 역시 계좌개설목적を確認하고 의심거래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피해발생계좌 개설 금융회사와 함께 사기 방지에 기여하고 노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금융회사의 피해보상 한도가 각 개정안에서 달리 설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현재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법정 보상금액 기준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3) 피해보상의 면책

□ 개정안들은 금융회사의 피해보상 면책요건을 정하려는 것임(강준현 의원안 제14조의3제4항 신설, 조인철의원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 또한 강준현의원안은 금융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음(강준현의원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현 행	강준현의원안	조인철의원안
<신 설>	③ <u>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피해 보상의 판단·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 정보의 제공 및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u> ④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피해금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1. <u>피해자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2. <u>피해자가 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u>	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피해금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1. <u>피해자가 법상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u> 2. <u>피해자가 금융회사의 피해보상의 판단·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 정보의 제공 및 동의 요청</u>

	3. <u>금융회사가 이체·송금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거래지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체·송금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u> 4. <u>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가 발생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날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u> 5. <u>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u> 6. <u>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하거나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u> 3. <u>금융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체·송금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알리고 거래지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체·송금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u> 4. <u>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가 발생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날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u> 5. <u>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u> 6. <u>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하거나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	---	---

□ 개정안들은 금융회사의 피해보상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
준현의원안(제14조의3제4항)과 조인철의원안(제14조의3제3항) 모두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호는 이미 피해금을 전액 배상받았거나 해당 전기통신금
용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 등 법 제11조²⁵⁾에 따른 피해환
급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지급정지 제도를 통한 피해환급 제외사유와
금융회사의 보상책임 제외사유를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 안 제3호는 금융회사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충분한 노
력을 기울여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보상책임
을 면제시키려는 것임.

- 이는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판단 오류로 인해 피
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분담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면책을 규
정하려는 것인데, 해당 조항이 금융회사의 책임 회피용 수단으
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경고 방식

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2.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3.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 위임)이 실효적인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안 제4호는 금융회사가 무과실책임을 지는 경우 허위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 신고를 피해자의 의무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5호는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보상책임이 법제화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이용자의 도덕적 해이²⁶⁾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안 제6호는 예비적 규정으로서, **금융위원회**는 추후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에 “피해자가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예시) 등을 규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한편, 면책요건 관련 조항(강준현의원안 제4항, 조인철의원안 제3항)의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면책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해당 조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피해금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6) 금융회사의 보상책임이 법제화될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우려가 있음.

(4) 배상책임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

- 강준현의원안은 보상책임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강준현의원안 제14조의3제6항 신설).

현 행	강준현의원안
<신 설>	⑥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보상의 대상 여부의 확인, 보상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관한 조사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의자에 관한 수사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피해발생계좌, 피해발생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피해발생계좌에서 발생한 피해 및 피해자에게 환급되거나 지급된 피해환급금·피해보상금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금융회사가 피해보상 여부 및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²⁷⁾ 및 피의자²⁸⁾에 대한 정보(수사기관 정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이미 환급된 피해금 등

27) 허위신고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피해자 조사 정보

28) 사기범죄의 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피의자 수사 정보

에 대한 정보(금융감독원 정보)가 필요하므로, 해당 정보 제공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3호는 ‘피해발생계좌’ 관련 정보만을 규정하고 해당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피해금 이전 경로 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는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역시 제출요구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초과보상시 반환 절차

- 강준현의원안은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권을 양수받도록 하여 금융회사가 사기범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거짓으로 피해를 보상받았거나 피해가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금융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 피해자가 피해환급금 등을 통해 피해금을 초과한 금액을 배·보상 받은 경우 금융회사의 피해보상액 중 피해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강준현의원안 제14조의3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현 행	강준현의원안
<신 설>	⑦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 보상받은 피해자 및 보상한 금액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범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때에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는 거짓으로 피해를 보상받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그 피해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

	<u>혀진 경우에 피해를 보상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u> <u>⑩ 피해자는 피해환급금,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은 금액,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 그 밖에 피해의 회복 또는 반환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은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금융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u>
--	---

□ 강준현의원안 제14조의3제8항은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경우 보상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가 사기범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인데, 이는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범위 내에서 사기범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안 제8항은 「민법」상 대항요건의 특례를 두어²⁹⁾ 피해자가 청구권 양도 시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사기범에게 별도의 통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기범이 도주중인 경우 등 개별 통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29)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만, 금융회사가 개정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발생하고, 이를 실제 보상할 경우 「민법」 제481조³⁰⁾에 따라 통지·승낙 없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다는 점, 금융회사의 보상이 보이스피싱 피해의 일부만을 보상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명시³¹⁾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항요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법」 규정 등을 참조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강준현의원안 제14조의3제9항은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를 보상받거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은 경우 금융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반환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금융회사의 과실 등으로 보상금이 오지급된 경우 등에 이자의 반환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자 반환의 경우 일정한 예외요건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강준현의원안 제14조의3제10항은 피해자가 배·보상받은 금액³²⁾이

30)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31)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지급정지를 통한 피해환급금,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보상금, 사기범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총 피해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전체 배·보상액” - “총 피해금”)을 금융회사가 보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피해자의 피해를 실제 발생한 피해금의 범위 내에서 보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금 외에 합의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금융회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피해보상 등 진행 상황을 인지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금융감독원의 보상 지원절차

- 강준현의원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보상판단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강준현의원안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 또한 금융감독원장이 보상판단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아직 보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금액의 산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그 판단 및 산정을 중지하여 보상판단지원의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려는 것임(강준현의원안 제14조의4제3항 신설).
- 또한 금융감독원장이 보상판단지원위원회의 보상판단지원 결과를 피해자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받은 금융회사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판단·산정하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게 통지결과를 고려한 보상 여부의 재판단 및 보상 금액의 재산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강준현의원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현행	강준현의원안
<신 설>	제14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보상의 처리 및 분쟁해결의 지원) ①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상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의 지원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보상대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판단 및 산정(이하 “보상판단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한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피해자 또는 금융회사는 피해 보상의 처리에 필요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상판단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판단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보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금액의 산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그 판단 및 산정을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중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관계 당사자 및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금융회사에 대하여 보상판단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보상판단지원위원회의 보상여부판단지원의 결과를 피해자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금융회사는 통지받은 결과를 고려하여 보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 금액의 산정을 하여야 하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통지받은 결과를 고려한 보상 여부의 재판단 및 보상 금액의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판단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보상판단지원의 요청 절차, 방법 및 통지, 그 밖에 보상판단지원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준현의원안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의무를 부여받게 되고, 구체적인 피해보상 신청 및 산정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³³⁾.

○ 한편, 피해보상의 처리 또는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 산하 보상판단지원위원회에 “보상판단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경유하는 보상판단지원 절차는 피해보상을 위한 필수절차는 아니고, 피해보상의 처리 및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금융회사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즉, ①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한 때에 피해 보상 절차가 개시되고, ② 이후 피해자 또는 금융회사가 피해 보상의 처리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인 금융감독원(보상판단지원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보상대상 여부의 판단 또는 보상금액의 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강준현의원안은 피해 보상 절차 개시 후 금융감독원장이 보상판단지원을 요청받은 경우³⁴⁾ 금융회사가 아직 보상결정을

33) 강준현의원안 제14조의3제2항

: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최대 금액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신청 및 산정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리지 않은 상태라면 자체적인 보상 여부 판단 및 보상 금액 산정을 중지하고 보상판단지원위원회의 보상판단지원 결과를 기다리도록 규정하고(안 제14조의4제3항), 이후 보상판단지원 결과를 통지받으면 그 통지결과를 고려하여 보상 여부 판단 및 보상 금액 산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4조의4제5항).

- 한편 금융회사는 보상판단지원위원회의 통지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통지결과를 고려하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바, 금융회사의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금융회사에게 통지결과를 고려한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의 재판단·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안 제14조의4제5항), 개정내용과 별개로 피해자는 금융회사의 최종 보상 결정에 대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4조의4제2항은 보상판단지원의 요청주체로 “피해자 또는 금융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요청권한이 부여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이를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4)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및 금융회사가 요청한 경우 모두 해당

○ 또한 보상절차 개시 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보상 결정 이전에 피해자 또는 금융회사가 보상판단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은 명확하나, 이미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보상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보상판단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문언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³⁵⁾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자구 정정 관련 사항으로,

안 제2항의 “피해 보상의 처리에 필요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를 “피해 보상의 처리 또는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로,

안 제5항의 “보상여부판단지원의 결과를”을 “보상판단지원의 결과를”로, “피해자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안 제6항의 “보상판단위원회”를 “보상판단지원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5) 강준현의원안 제14조의4제5항 후단은 보상판단지원위원회의 결과 통지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보상 여부의 재판단 및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7) 허위 보상신청시 벌칙 근거 마련

- 강준현의원안은 피해자가 허위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신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강준현의원안 제16조제5호 신설).

현행	강준현의원안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16조(벌칙) ----- ----- -----. 1. ~ 4. (현행과 같음) 5. 거짓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u>피해 보상을 신청한 자</u>

- 현행법 제16조에서 이미 허위로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허위로 피해 보상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형량수준으로 처벌하려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벌칙규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3. 금융회사의 피해방지체계 강화(조인철의원안)

(1)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 운영 의무화 등

□ 조인철의원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거래탐지시스템”의 정의조항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전기통신금융사기거래탐지시스템 포함)를 갖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조인철의원안 제2조제9호 및 제2조의4제3항 신설).

현행	조인철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9. “전기통신금융사기거래탐지시스템”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및 계좌를 상시적으로 탐지 및 점검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조직, 전산설비(전기통신금융사기탐지시스템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제1항제1호는 금융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 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금융회사 자체점검 절차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서는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의 정의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음³⁶⁾.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의 정의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 운영을 의무화하면서, 운영 시 갖추어야 하는 전산설비에 해당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명확히 포함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보임.

3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1. 이용자의 계좌가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2.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의 점검·개선

(2) 금융회사 관리·감독 강화

- 조인철의원안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조인철의원안 제2조의2제2항).

현행	조인철의원안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생략)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 -----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의4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 ----- 개선계획의 제출-----.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전산시설 및 조직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조의2는 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선계획 제출대상 선정 기준³⁷⁾]

- ① 사기이용계좌 발생 비율 0.4% 초과 (신규개설 수시입출금식 계좌 대비)
- ②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및 피해환급금액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
- ③ 기타 사기이용계좌 발생 등으로 건전 경영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이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이러한 개선계획 제출명령 제도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바, 개정안은 피해 발생 이전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노력까지 반영된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체계에 대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계획 제출 대상에도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관련 인력 및 시설 등 확충 사항을 추가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3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3조(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반기별 총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의 비율이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
3. 그 밖에 사기이용계좌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건전 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이용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개선계획 제출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 참고로, 현재 금융감독원의 자체적으로 은행·상호금융권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피해구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³⁸⁾, 개정안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 운영실태 평가제도는 해당 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38) 현재 운영중인 보이스피싱 내부통제평가 제도 관련 개요는 참고1 자료 참조.

4. 금융회사의 임시조치 등 권한 강화(조인철의원안)

(1) 임시조치 대상 확대 및 의심계좌확인조치 제도 신설

□ 조인철의원안은 임시조치의 종류에 계좌의 ‘입금 지연 또는 일시 정지’를 추가하고, 임시조치 대상 계좌를 “피해의심거래계좌”에서 “사기관련의심계좌”로 변경하며, 임시조치 이후 본인확인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조인철의원안 제2조의5).

현행	조인철의원안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 ----- ----- ----- 입·출금 ----- ----- ----- 1. 전기통신금융사기거래탐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대통령령---- 사기관련의심계좌----- ----- ----- ----- ----- ----- -----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2. -----

가 <u>피해의심거래계좌</u>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u>본인확인조치</u>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u>본인확인조치</u>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u>피해의심거래계좌</u>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u>사기관련의심계좌</u>----- ----- ② ----- ----- ----- 본 <u>인 및 해당 계좌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이하 “의심계좌확인조치”라 한다)</u>-----.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u>의심계좌</u> <u>확인조치</u> ----- <u>사기관</u> <u>련의심계좌</u>----- -----.
--	---

□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계좌가 ① 자체점검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³⁹⁾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② 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로부터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 즉 임시조치를 실시하여야 함⁴⁰⁾.

39)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 즉, 사기범의 계좌로 추정되는 계좌를 의미함.

4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

○ 금융회사는 임시조치 이후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⁴¹⁾’를 하여야 하며,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함⁴²⁾.

□ 그런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고도화된 시나리오에 기반한 기망이 주로 사용되어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예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임시조치의 종류에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지연 또는 일시정지뿐만 아니라 ‘입금’ 지연 또는 일시정지까지 추가하고(안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 부분), ② 임시조치 대상 계좌를 “피해의심거래계좌”에서 “사기관련의심계좌⁴³⁾”로 변경하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41)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4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4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여 사기범의 계좌 외에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조의5제1항 각 호), ③ 임시조치 이후 본인확인조치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의 전기통신금융사기와의 관련성까지를 확인하는 조치까지 실시하도록 함으로써(안 제2조의5제2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보임.

□ 다만, 안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사기관련의심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관련의심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1320호, 2026. 2. 3., 일부개정, 2026. 8. 4. 시행 예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기관련의심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피해금의 입금·이체·송금·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나.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2) 계좌 해지 또는 한도제한 요건 확대

- 조인철의원안은 ① 이용자가 의심계좌확인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② 임시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해당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위험이 현저히 높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좌의 해지 또는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조인철의원안 제2조의5 제5항 신설 등).

현행	조인철의원안
<u><신설></u>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u>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u>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⑤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u>의심계좌확인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해당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위험이 현저히 높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u> ⑥ -----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통지·해제, 의심계좌확인조치, 사기관련의심계좌의 해지 및 계좌의 한도제한을 ----- ----- -----.

□ 현행법 제2조의6은 신규계좌 개설 시 등에만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을 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에 신규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목적 확인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⁴⁴⁾.

○ 개정안은 계좌의 해지 또는 한도제한 요건을 확대하여 ① 신규계좌 개설 시뿐만 아니라 ② 이용자가 임시조치에 따른 의심계좌확인조치에 불응하거나 ③ 임시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해당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위험이 현저히 높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계좌 개설 시점뿐만 아니라 계좌 운용의

4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2. 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전 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계좌의 해지 또는 한도제한이 가능해지는데, 의심계좌확인조치의 실효성이 증대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가능해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2조의5제6항의 문구 관련, 안 제5항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계좌가 반드시 ‘사기관련의심계좌’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불분명한 측면⁴⁵⁾이 있으므로, “사기관련의심계좌의 해지 및 계좌의 한도제한”을 “계좌의 해지 및 한도제한”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 안 제2조의5제5항 중 “해당계좌가”를 “해당 계좌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5) 개정안에 따르면 1) 이용자가 의심계좌확인조치에 불응하거나 2) 해당 계좌가 임시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 해당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데, 1)의 경우 이용자가 의심계좌확인조치에 불응하였다고 해서 바로 해당 계좌가 ‘사기관련의심계좌’라고 단정하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함.

(3) 임시조치 등 권한확대에 따른 손해배상 면책

- 조인철의원안은 금융회사가 임시조치, 의심계좌확인조치, 계좌 해지 또는 한도제한 조치를 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면책하려는 것임(조인철의원안 제2조의5제7항 신설).

현행	조인철의원안
<신설>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⑦ <u>금융회사(금융회사의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적극적인 임시조치 등 실시가 필요하나, 적극적인 임시조치에 따른 입출금 제한, 계좌 해지 등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규모 민원 및 피소가 예상되는바, 이러한 부담은 금융회사의 보수적·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치결과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생각됨.

5. 기타 자구 정비(조인철의원안)

□ 이하 개정조문은 조인철의원안 신설 조문 등에 따른 조문 정비 관련 사항임.

현행	조인철의원안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2. ---- 제4항 또는 제2조의5제5항--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정지)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u>피해의심거래계좌</u> 에 대한 <u>본인확인조치</u> 결과	3. ----- <u>사기관련의심계좌</u> (제2조제8호에 따른 사기관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5. (생략) ② ~ ④ (생략)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 ② (생략)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2의2.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 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또는 본인 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의3. ~ 7. (생략) ② ③ (생략)	<u>련의심계좌를 말한다</u>)에 대한 의심 <u>계좌확인조치</u> ----- 4.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제2조제8호에 따른 사기관련의심계좌----- ----- -----. 제18조(과태료) ①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조의5제6항----- ----- 의심 <u>계좌확인조치</u>----- ----- ----- 2의3. ~ 7.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	---

□ 다만, “사기관련의심계좌” 관련 조문 중 해당 계좌를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사기관련의심계좌⁴⁶⁾”(즉, 사기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로 특정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바,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 행	조인철의원안	수정필요사항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정지) ①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3. ----- - 사기관련의심계좌(제2조제8호에 따른 사기관련의심계좌를 말한다)에 대한 의심계좌확인조치 -----	3. ----- - 사기관련의심계좌(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사기관련의심계좌를 말한다)에 대한 의심계좌확인조치 --

4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기관련의심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피해금의 입금·이체·송금·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나.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	-----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 에 대한 특례) ①·② (생략)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 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 및 「전자 금융거래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u>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u> 」 제 32조·제33조 및 「전 자금융거래법」 제26조 에도 불구하고 전기통 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 계좌와 <u>피해의심거래계 좌</u> 에 관한 정보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③ ----- ----- ----- ----- ----- ----- 「 <u>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u> 」 제32조· <u>제33조</u> ----- ----- ----- 제 2조제8호에 따른 사기 <u>관련의심계좌</u> ----- ----- -----.	③ ----- ----- ----- ----- ----- 「 <u>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u> 」 제32조· <u>제33조</u> ----- ----- ----- 제 2조제8호가목에 따른 <u>사기관련의심계좌</u> ----- ----- -----.

참고1

보이스피싱 내부통제평가 관련

I. 개요

-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은행·상호금융권의 피해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취약점 보완 및 제도개선을 지도하여 피해예방 효과를 제고
- * '20년 이후 은행권 대상 서면·현장평가(연 1회) → '24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II. 평가 방식

- 사기이용계좌비율 등 계량평가(60%)와 피해예방 노력 등 비계량 평가(40%)를 합하여 금융회사별 종합등급* 산출
 - *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취약)
- **(계량지표)** ①고객수 대비 피해자수, ②활동계좌 대비 피해계좌수, ③활동계좌 대비 사기이용계좌수를 산출(3개 항목)하여 평가
- **(비계량지표)** ①보이스피싱 관련 제도 운영 현황, ②피해구제 업무의 적정성 등 피해예방 노력 전반(6개 항목)에 대해 평가

보이스피싱 평가 개요

구 분	내 용
평가대상	▪ 국내은행(수출입 제외 19개) 및 상호금융권(농·수·신협중앙회 및 산림조합)
평가주기	▪ 연 1회(평가대상 기간 : 평가기준일 직전 1년)
평가지표	<계량지표> ① 고객수 대비 피해자수 ② 활동계좌 대비 피해계좌수 ③ 활동계좌 대비 사기이용계좌수 <비계량지표> ①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 운영 현황 ② 피해예방 책임 준수 현황 ③ 피해구제 업무의 적정성 ④ 임직원 교육 ⑤ 금융소비자 교육·홍보 ⑥ 기타 정책 및 제도 이행 현황
결과활용	▪ 금융회사의 자체 취약점 보완 및 제도개선 지도 및 모범사례 공유

(자료: 금융위원회)

문 의 처
02)6788-5108